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초 제2선거구 출신 이숙자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24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조례안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시장
정비구역 면적에 상관없이 대규모점포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 매장면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소규모
시장의 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였습니다.

☐ 이에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내 소규모 시장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규모 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조항 신설로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취지와 상권 활성화를 고려하여 매장면적 합계의 규모는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장정비구역 면적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소규모 시장정비구역에서 대규모점포 개설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시장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